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752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15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필요성이 줄어들어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”을 각각 “공정거래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심의위원회 구성, 그 밖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”로 한다.
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36조 중 “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재심의 중인 사

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4제3항 및 4항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재심의 중인 사항은 제25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다.

제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
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
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
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
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
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
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
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
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
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
야 하며, 통지일부터 1개월이
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
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
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⑤ (생략)

⑥ 심의위원회의 구성, 그 밖에
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
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
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
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
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
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
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
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
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
부여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-----

-----.

제3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 -----

-- 사람-----

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-----.